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833 발의연월일: 2020. 11. 2.

발 의 자: 김기현·홍문표·박성중

이주환 · 김성원 · 김태호

권명호・金炳旭・김선교

홍준표 • 김영식 • 임이자

이채익 · 서범수 · 조수진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「조세특례제한법」,「관세법」 및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이 신산업 혁신생태계로 전환됨에 따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과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의 유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감면 대상을 첨단기술 투자기업, 첨단제품 투자기업,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에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경제자유

구역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85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.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"를 "생활여건 개선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, 나아가 산업의 혁신생태계 를 조성함으로써"로 한다.

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4(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여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(이하 "발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시·도지사는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-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
- 2.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
- 3. 해당 지역 내 중점특화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
- 4.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
- 5. 중점특화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

- 6.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외국인투자기업(이하 "입주외국인투자기업"이라 한다)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(이하 "입주국내복귀기업"이라 한다)"을 "다음 각 호의 기업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"을 "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"으로, "설치 및 운영에"를 "설치·운영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"로 한다.

- 1.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(이하 "입주외국인투자기업"이라 한다)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(이하 "입주국내복귀기업"이라 한다)
- 3.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(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) 투자기업
- 4.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고자 하는 업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조(목적) 이 법은 경제자유구 제1조(목적) ------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 ----생활여건 개선 및 외국 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인투자를 촉진하고, 나아가 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함으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의4(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<신 설>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경제 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제자유 구역발전계획(이하 "발전계획" 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 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 는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 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.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

제16조(세제 및 자금지원) ① 국 제16조(세제 및 자금지원) ① --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
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
기업(이하 "입주외국인투자기 업"이라 한다)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(이하 "입주국내복귀기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
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

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. 해당 지역 내 중점특화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4.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. 중점특화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경제자유구 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하다. -----다음 각 호의

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지방자치단체는 <u>외국인투자기</u> 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하 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,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, 의료시설·교육시설·연구 시설·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 치와 관련된 시설의 <u>설치 및</u>

- 1.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(이하 "입주 외국인투자기업"이라 한다)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(이하 "입주국내복귀기업"이라 한다)
- 3.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(「산 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범 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 술 및 제품을 말한다) 투자 기업
- 4.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 을 활용하여 특화시키고자 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점유치업종 투 자기업

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설치·운영 및 혁신생태계 조성수 있다.을 위해------③ ~ ⑤ (생 략)③ ~ ⑤ (현행과 같음)